

이천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1999. 5.
제출자 : 이천시장

제안이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의 소득사업과 특별지원사업이 사업목적과 용자대상이 동일함에도 재원 및 이자율 등이 이원화되어 무이자인 특별지원사업만을 선호할 뿐 아니라 용자조건, 관리체계 등이 상이해 혼선을 초래하고, 가구당 용자지원액을 최고 500만원이하로 한정하여 지원함에 따라 실질적인 사업 지원효과가 거의 없어 현행조례인 '이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위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주민소득지원자금은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루하거나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등으로 하여 용자대상을 선정함(안 제2조).
- 나. 용자대상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주민소득지원자금용자대상자선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함(안 제4조).
- 다. 용자한도액을 가구당 2천만원이하로 하되 2년거치 2년균등상환으로 하고 이율은 연리 5퍼센트로 하며 특히, 용자금의 대부신청시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움으로써 자금의 안정성을 확보함(안 제5조, 제6조).
- 라. 용자금을 한번 대부받은 가구는 용자금 상환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용자금일지라도 용자가 불가하도록 함(안 제10조).
- 마.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용자금에 대해서는 시금고 지정 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고, 용자금의 중복용자를 금지하며 상환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상환기간 경과후 6월이내에도 상환금을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조치하도록 함(안 제9조, 제10조, 제16조).
- 사.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은 일반회계보조금, 전입금, 회수용자금 등으로 하며 세출은 주민소득지원사업을 위한 용자금으로 함(안 제14조, 제15조).

이천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융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
2. 시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한 자금

제3조 (융자대상) ①주민소득지원자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조례 이외의 타법령 및 지침등에 의하여 지원되는 사업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1.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2.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3.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4.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가구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 ③시장은 융자대상가구를 선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 설치)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주민소득지원자금융자대상자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로 하며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융자한도 및 이율등) ①융자한도액은 가구당 2천만원이하로 하되 2년거치 2년균 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②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5퍼센트로 하며 거치기간은 제외한다.

제6조 (융자금 대부신청) ①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이하 "대부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의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부신청서에는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③ 시장은 대부신청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담보물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 (대상자 선정통보)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금지원대상자가 결정되면 대부신청자에게 용자결정 사실을 통지한다.

제8조 (용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시장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이자 및 연체이자) ① 용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시 그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용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금고 지정 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0조 (충복용자의 금지) 용자금을 대부 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용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용자할 수 없다.

제11조 (용자금의 회수) 시장은 용자금을 대부 받은 가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용자금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자금을 용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4. 용자를 받은 자가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12조 (용자금 상환통지) 시장은 제11조의 각호에 의하여 상환기일 전에 용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용자받은 가구에 통지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가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감독) 시장은 자금을 용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감독하고 사업운영실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특별회계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이천시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5조 (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보조금, 전입금, 회수용자금, 자금운용에 의한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②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주민소득지원사업을 위한 용자금으로 한다.

제16조 (체납처분)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조치한다.

1. 상환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상환기간 경과후 6월이내에도 상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통지를 받고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제17조 (감면조치) 시장은 자금을 용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제18조 (준용) 이 조례 시행에 있어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등) ① 이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용자된 용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용자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전에 용자된 자금의 상환조건, 가산금, 이율등은 용자당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이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이 조례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으로 이입한다.

제3조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